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축산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체계 마련 〉

■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22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총괄검토	
가. 검토의견	3
나. 제정안의 체계	6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적 규정	8
나. 재활용 기본계획	11
다. 분리배출 의무 및 지원	14
라. 축산부산물처리업	16
마. 축산부산물자원화시설	21
바. 보칙 및 벌칙	23
V. 입법의 재정영향	2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지아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6. 6. 26.
3.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축산부산물은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원피, 뼈, 지방 등으로서 매년 상당한 물량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축산부산물의 상당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처리되고 있어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축산 농가 및 관련 업계의 처리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악취·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한편, 축산부산물은 바이오디젤 연료·산업용 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비료·사료·의약품·화장품 등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높은 자원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처리·재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자원순환 및 친환경 산업육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축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축산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환경보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축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다. 가축 또는 축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자 중에서 축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축산부산물의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라. 축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9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축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6조).

IV. 검토의견

1. 총괄검토

가. 검토의견

제정안은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원피·원모, 뼈·뿔·내장, 지방·혈액 등을 축산부산물로 정의하고, 축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재 축산부산물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없으며, 축산물의 생산·가공 과정 등에서 발생하여 폐기물에 해당하는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동·식물성잔재물¹⁾ 중 축산물가공잔재물, 폐모피류,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 동물털, 동물성유지류 및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등을 폐기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음.

다만, 이와 같은 축산부산물이 모두 처분되는 것은 아니며, 현행 「폐기물관리법」²⁾에서도 동물성잔재물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축산부산물은 그 종류에 따라 사료·비

1) 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유통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함

2)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료 등의 원료나 유지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 단순히 소각·매립하여야 하는 폐기물과 달리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축산부산물을 별도의 자원으로 관리하기보다는 폐기물의 한 종류로 분류하여 배출·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관리하고 있어, 축산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재활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재활용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제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굴 패각 등이 재활용 대상으로 인정되어 해양투기가 줄어들고,³⁾ 어업인의 폐기물부담금 부담도 경감⁴⁾된 사례와 같이,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축산부산물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별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축산부산물의 발생·배출부터 처리·재활용에 이르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축산부산물의 특성에 맞는 관리와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축산부산물의 처리·재활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미 관계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재활용 촉진을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신설할 경우 기존 법체계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축산부산물의 발생·처리 과정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리뿐만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처리 및 위생관리,

3) 현재 관련 통계조사 실시중(해양수산부)

4)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관리 등 관계 법률이 적용되고 있음. 이처럼 축산부산물의 관리가 환경·위생·방역에 관한 기존 법체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처리·관리체계를 신설할 경우 기존 법률과 규율범위가 중첩되고 관계 기관 간 역할이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축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처리·관리체계를 신설하기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률의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폐기물협회는 별도의 축산부산물 처리체계를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체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한국축산물처리협회도 새로운 행정규제와 초기 인프라 구축에 따른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임.

[정부 부처 및 관련 이해관계자 주요의견]

농림축산식품부	▫ (신중검토) 축산부산물의 폐기·환경 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의 체계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별도 법률로 처리규제 체계를 신설할 경우 관리중복 및 기관 간 역할 혼선, 처리 사각지대 발생 우려
기후에너지환경부	▫ (신중검토) 폐기물의 배출부터 수집·운반, 보관, 처분, 재활용 등에 관한 기준 등은 기존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축산부산물만을 별도의 법령으로 분리·관리할 경우 다양한 부산물·폐기물과 혼합 재활용을 저해할 수 있음
한국폐기물협회	▫ (신중검토) 축산부산물은 현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재활용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관리체계를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
한국축산물처리협회	▫ (신중검토) 현행 법령에 따라 축산부산물은 엄격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별도의 행정규제 신설은 초기 인프라 구축 및 규제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나. 제정안의 체계

제정안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체계에 맞추어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장 없이 21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제정안의 목적과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총칙적인 사항을, 안 제5조·제6조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축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축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 대한 분리배출 의무 부과와 이를 위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축산부산물 처리업을 도입함에 따른 처리업의 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및 결격사유, 허가의 취소, 과징금, 휴업과 폐업신고 등을 규정하며,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과 재활용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구성]

구 분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수산물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총칙적 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재활용 기본계획	제5조(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축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제5조(수산물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수산물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분리배출 의무·지원	제7조(축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 제8조(축산부산물 분리 배출 시설 지원)	제7조(수산물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 제8조(수산물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축산부산물 처리업	제9조(축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제11조(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결격사유) 제13조(허가의 취소 등) 제14조(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15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9조(수산물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제11조(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결격사유) 제13조(허가의 취소 등) 제14조(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15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제16조(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제17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제18조(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제16조(수산물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제17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제18조(재활용제품 판로확대)
보칙·벌칙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0조(벌칙) 제21조(과태료)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0조(벌칙) 제21조(과태료)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총칙적 규정

제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함.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축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3. “축산부산물”이란 가축이나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원피·원모, 뼈·뿔·내장, 지방·혈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축산부산물 재활용”이란 축산부산물을 식품·비료·사료·화장품·의약품 등 완성품의 원료, 공업용 제품 등으로 제조·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축산부산물 수집·운반업”이란 축산부산물을 수집하여 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축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이란 축산부산물을 세척, 분리, 선별, 파쇄하거나 재활용제품으로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7. “축산부산물 처리업”이란 축산부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축산부산물의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8. “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란 축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축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정 안

② 축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또는 매립 대상 폐기물로 한정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④ 이 법의 적용대상 축산부산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첫째, 안 제2조는 가축, 축산물, 축산부산물 및 축산부산물 재활용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제정안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다만, 안 제2조제3호의 ‘축산부산물’의 정의는 그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제정안은 ‘축산부산물’을 가축이나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원피·원모, 뼈·뿔·내장, 지방·혈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부산물은 품목이 다양하고 동일한 물질도 발생 상태나 활용 여부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도축·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뼈 등은 식용으로 이용되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에 해당하는 반면, 이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할 수 있어,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축산부산물과 현행법상 축산물 또는 폐기물의 범위가 중첩될 수 있음.

축산부산물의 정의는 제정안의 적용대상을 결정하고 관계 법률의 적용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구체적인 범위를 포함하여 제정안에서 규율하려는 축산부산물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수산부산물”을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정의하여, 수산부산물을 수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시행령에서는 수산부산물의 범위를 “패류 껍데기”로 한정하고 있음.⁵⁾

둘째, 안 제3조는 제정안과 관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축산부산물의 처리·재활용에 적용되는 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다만, 제정안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을 구분함에 따라 기존 관리체계와 중복되거나 실제 처리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축산부산물은 식품·사료·비료·의약품 등의 원료로 활용되는 경우 각

5)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④ 이 법의 적용대상 수산부산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패류(貝類) 껍데기로 한다. (이하 생략)

각의 관계 법률에 따른 위생·안전 등의 규제를 적용받으므로, 제정안을 포괄적으로 우선 적용할 경우 기존 법령과 상충될 수 있음.

또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은 축산부산물에는 제정안을 적용하는 반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에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동일한 축산부산물이라도 발생·처리 상태에 따라 적용 법률과 관리주체가 달라져 실제 처리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나. 재활용 기본계획

제정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과 축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규정함.

제 정 안
제5조(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축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인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정 안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축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축산부산물의 발생량
2. 연간 축산부산물의 처리실적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통계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첫째, 안 제5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임.

다만,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과 현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순환경제기본계획에는 자원순환시설의 확충, 재활용제품의

보급·사용 촉진, 순환경제 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제정안의 기본계획에도 축산부산물 처리기술의 연구개발·보급, 자원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 유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두 계획이 별도로 수립될 경우 일부 정책과제가 중복될 수 있음.

따라서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내용을 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두 계획 간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유사입법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u>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u> 1.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3.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계획

둘째, 안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축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축산부산물 재활용 계획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려는 취지임.

다만, 축산부산물은 품목이 다양하고 동일한 물질도 발생 상태나 활

용 여부 등에 따라 식품·사료 등의 원료로 이용되거나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어 발생량 및 재활용 실적 등을 일관된 기준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현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와 「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따른 폐기물 발생·처리실적 보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항목을 설정할 때 기존 통계 및 보고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활용 가능한 자료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다. 분리배출 의무 및 지원

제정안 제7조 및 제8조는 축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와 지원을 규정함.

제 정 안
제7조(축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 ① 가축 또는 축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자 중에서 축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축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축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축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축산부산물분리배출 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정 안

제8조(축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① 시·도지사는 축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축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부산물 분리배출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축산부산물 다량배출자를 분리배출의무자로 지정하여 다른 폐기물과 분리배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시설구축 및 인력고용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축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폐기물의 혼입을 방지하고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재활용 가능한 축산부산물의 회수 및 자원화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축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과 실제 재활용 확대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축산부산물은 발생 과정에 따라 종류와 배출량이 다르고, 식품·사료 등의 원료로 활용되거나 폐기물로 처리되는 등 처리·활용 방식에도 차이가 있음.

특히 폐기물로 처리되는 축산부산물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별도의 분리배출 의무를 부과할 경우 배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분리·보관 비용에 비하여 재활용되는 축산부산물의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음.

라. 축산부산물처리업

제정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축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와 준수 사항,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규정함.

제 정 안
제9조(축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① 축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축산부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허가증을 빌려주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제 정 안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축산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축산부산물 처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 축산부산물 처리 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축산부산물 처리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리 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축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축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축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13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처리업자(제10조에 따라 처리업자의

제 정 안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4.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9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축산부산물의 적체(積滯) 등으로 축산부산물 위탁처리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축산부산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정 안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지사가 사용하되, 축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15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축산부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축산부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위한 처리업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결격사유,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을 규정하여 축산부산물 처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축산부산물은 가축의 도축·가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고 식품·사료 등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발생 및 활용 특성에 차이가 있음.

이에 따라 축산부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처리업자를 별도로 두고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과 준수사항 등을 적용할 경우, 축산부산물의 특성에 맞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유도하고 재활용

과정에서의 위생·환경상 위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재 축산부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서 축산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축산부산물 처리업을 별도로 신설할 경우 기존 폐기물처리업자가 축산부산물을 계속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허가를 받고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등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⁶⁾

이와 관련하여, 한국폐기물공제조합도 실질적인 재활용 방법이 동 일함에도 별도의 허가 취득과 시설·장비 구비가 필요하게 되어 기존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축산부산물의 관리에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6)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축산부산물 처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마. 축산부산물자원화시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6조(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축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축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축산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 등의 수요에 맞게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축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처리·보관
2. 축산부산물의 자원화
3. 축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보관·판매
4. 축산부산물 재활용기술 연구·개발
5. 축산부산물 재활용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축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재활용제품 판로확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자원화시설과 처리업자가 생산하는 비료, 사료, 화장품, 의약품, 공업용 제품 등의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축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는 시·군·구청장에게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5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⁷⁾.

그러나, 재활용 관련 시설은 주로 대형폐기물과 포장재, 폐지, 고철 등 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재활용자원의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에 설치 목적⁸⁾을 두고 있어 축산부산물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제정안은 축산부산물자원화시설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부산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8)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보관·선별·처리대상 재활용 가능자원 등)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7호의 제품·포장재
2. 폐지(廢紙)
3. 고철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

물의 특성을 감안한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다만, 현행법에 따른 종합적인 재활용 관련 시설에서 축산부산물을 분리하여 별도의 시설로서 각각 운영하도록 한다면, 시설의 중복투자 및 운영비 부담 등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바. 보칙 및 벌칙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과태료를 규정함.

제 정 안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부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营业을 한 자 ③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축산부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

제 정 안

러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6.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권한·업무에 대한 위임·위탁과 제정안에 따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하여 제도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축산부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무허가 처리업, 분리배출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 대상과 제재수준도 유사 입법례인 「수산물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비교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보임.

V. 입법의 재정영향

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⁹⁾

문 의 처
02)6788-5415

9)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 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